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0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김남근 • 권향엽 • 김동아

김문수 · 김용만 · 김 윤

김한규 • 문금주 • 박지원

박해철 • 백승아 • 양부남

이광희 • 이기헌 • 이용우

이재강 · 임미애 · 임호선

정동영·채현일·최민희

황정아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지원)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성매매 피해자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지원) ① 성매매피해자등		
	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		
	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		
	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		
	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성매매피		
	해자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		
	<u>원시설의 장은 「장애인·고령</u>		
	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원시		
	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